

## 환경부고시 제2001-98호

##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중 개정

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(환경고시부 제2001-81호)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2001년 8월

환경부장관

[별표1] 연료의 황합유기준(제5조 관련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| 구 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황합유기준별 시행시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'97.6.30까지         | '97.7.1부터 2001.6.30까지 | 2001.7 이후부터                   |
| 유<br>류 | 증유<br>(벙커-A, 벙커-B, 벙커-C) | 1.0% 이하            | 0.5% 이하<br>1.0% 이하    | 0.3% 이하<br>0.5% 이하<br>1.0% 이하 |
|        | 경유<br>등유1호(보일러등유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0.1% 이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저황왁스유<br>(LSWR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0.3% 이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석<br>탄 | 부생<br>연료유                | 1호(등유형)<br>2호(중유형) | -                     | 0.1% 이하<br>0.2% 이하            |
|        | 유연탄<br>무연탄               | 0.7% 이하            | 0.5% 이하<br>0.5% 이하    | 0.3% 이하<br>0.5% 이하            |

비고 : 1. 유류 및 석탄의 황합유기준은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, 대기환경 보전법시행 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와 연료사용승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 승인을 얻은 시설중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경우에도 위 표중 증유의 기준을 적용한다.

[별표2]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(제6조제1항 관련)의 가. 경유(황함유 기준 0.1%이하)와 나. 중유중 (3) 0.3% 이하 중유(LSWR 포함) 공급 · 사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경유(황함유기준 0.1% 이하)

| 시·도 | 대상 지역 별 시행 시기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| 고시 시행일부터 '97. 6. 30까지 | '97.7.1이후   |
| 도   | 특별(광역)시               | 서울·인천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   |
|     | 경기                    | 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의왕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의정부·남양주·하남·고양·오산·이천·용인시, 광주·김포·화성군 |
|     | 강원                    | 춘천·원주·강릉·동해·삼척시   |
|     | 충북                    | 청주·충주·제천시   |
|     | 충남                    | 아산·서산시, 당진군   |
|     | 전북                    | 전주·군산·익산시   |
|     | 전남                    | 여천·광양·여수·목포·나주시, 여천군  |
|     | 경북                    | 포항·구미·경주·경산·김천시   |
|     | 경남                    | 울산·김해·창원·마산·진주·진해·양산시   |
|     | 제주                    | 제주  |

비고 : 경유 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등유1호(보일러 등유), 부생연료유1호(등유형)나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.

나. 중유

(3) 0.3% 이하 중유(LSWR 포함) 공급 · 사용지역

| 시·도 | 대상 지역 별 시행 시기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| 2001. 7. 1부터  | 2002. 7. 1부터   | 2003. 7. 1부터    |
| 도   | 특별(광역)시       |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울산 | 광주·대전           |
|     | 경기            | 수원·안산시         | 군포·오산시          |
|     | 강원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강릉시             |
|     | 충북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청주시             |
|     | 충남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
|     | 전북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전주·군산시          |
|     | 전남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여수시(구 여천시), 광양시 |
|     | 경북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구미시             |
|     | 경남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창원·마산시          |
|     | 제주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김해시             |

비고 : 1.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.

2. 0.3% 이하 중유 (LSWR 포함) 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부생연료유 2호(중유형)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하 자료는 종전에 고시한 내용으로 금번 고시 내용과  
관련된 내용을 발췌·개재한 것임.

편집자주

## 나. 중유

## (1) 1.0%이하 중유 공급·사용지역

| 시·도     | 대상 지역별 시행 시기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기시행지역        | '96. 7.1부터   | '97. 7. 1부터            | '99. 1. 1부터    |
| 특별(광역)시 | 서울·인천·부산·대구  | 광주·대전  | -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도       | 경기           | 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<br>의왕·의정부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<br>남양주·하남·고양시·광주·김포군 |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천·용인시, 화성군    |
|         | 강원           | -  | 춘천·원주시                 | 강릉·삼척·동해시      |
|         | 충북           | -  | 청주·충주·제천시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충남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| 천안·아산·서산시, 당진군 |
|         | 전북           | -  | 전주·군산·익산시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전남           | -  | 여천·광양시, 여천군            | 목포시            |
|         | 경북           | -  | 포항·구미시                 | 경주·김천시         |
|         | 경남           | -  | 울산·김해·창원·마산·<br>진해·양산시 | 진주시            |
|         | 제주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          |

비고 :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한다.

## (2) 0.5%이하 중유(LSWR 포함) 공급·사용지역

| 시·도     | 대상 지역별 시행 시기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'97. 7. 1부터  | '98. 7. 1부터   | '99. 7. 1부터  | 2001. 7. 1부터           |
| 특별(광역)시 | 서울·인천·대구     | 부산  | 대전·광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       | 경기           | 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<br>의왕·의정부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<br>하남·고양·남양주시, 광주·김포군 | -            | 오산·이천·용인시, 화성군         |
|         | 강원           | -   | 원주시          | 춘천·강릉·동해·삼척시           |
|         | 충북           | -   | 청주시          | 충주·제천시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충남           | -   | 서산·아산·천안시    | 당진군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전북           | -   | 전주·익산·군산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전남           | 여수시(구여천시, 구여천군)   | -            | 나주시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경북           | 경산시   | 여수(구여수시)·광양시 | 구미·김천·경주·포항시           |
|         | 경남           | 울산시   |              | 창원·마산·진해·진주·<br>김해·양산시 |
|         | 제주           | -   |              | 전지역                    |

비고 :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한다.